비조치의견서 (☑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담당 부서	IT·핀테크전략국	담당자 (직위, 성명)	변남주 선임조사역	연락처	02-3145-7424
요청대상 행위	□ (A)그룹망 DMZ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(B)회사 내부망 내 정보처리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송수신하는 경우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(전자 금융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*)에 해당 되는지 여부 * DMZ 구간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내부통신망의 정보처리시스템은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 가능					
판단	□ 요청대상 행위는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됩니다.					
판단이유	 □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나 (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) ○ DMZ 구간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내부통신망의 정보처리시스템은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가 가능합니다.(전자금융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) □ DMZ 구간이란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(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)로, 특정 용도(예: 인터넷 뱅킹 등 대고객 서비스)의 DMZ만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회사 내부망과 그룹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도 DMZ 					
	 따i 처i 제2 		MZ 구간 내 데이터를 송	수신해야 하	는 경우는)회사 내부망 정보 - 전자금융시행세칙 적용 예외 사유에